

효성중공업 (주)	표 준 명	표준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차수	Page
	이사회운영규정	HS-1-9-01-0	2018.06.01	2025.02.26	2차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① 이사회는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효성중공업 (주)	표 준 명	표준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차수	Page
	이사회운영규정	HS-1-9-01-0	2018.06.01	2025.02.26	2차	2/9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서의 위임이 금지된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효성중공업 (주)	표 준 명	표준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차수	Page
	이사회운영규정	HS-1-9-01-0	2018.06.01	2025.02.26	2차	3/9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 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 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 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3. 소 집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필요 시 의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결의방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의 작성 방법은

효성중공업 (주)	표 준 명	표준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차수	Page
	이사회운영규정	HS-1-9-01-0	2018.06.01	2025.02.26	2차	4/9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간사는 재무담당 임원 또는 팀장이 되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 3(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 성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2. 의 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3. 소 집

(1)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의장이 소집한다.

(2) 감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결의방법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2.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

③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의 작성방법은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간사는 재무담당 임원 또는 회계팀장이 되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 4(경영위원회) ①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효성중공업 (주)	표 준 명	표준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차수	Page
	이사회운영규정	HS-1-9-01-0	2018.06.01	2025.02.26	2차	5/9

1. 구 성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의 장

경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 이 경우 다수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3. 소 집

(1) 경영위원회는 필요 시 의장이 소집한다.

(2) 경영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결의방법

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발행, 주식예탁증서발행 등에 의한 신주발행 및 실권주, 단주의 처리포함)

4.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6.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8.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우선주식의 이익배당방식, 우선배당을 결정, 보통주로의 전환사항 등 포함)

9.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11. 지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1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효성중공업 (주)	표 준 명	표준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차수	Page
	이사회운영규정	HS-1-9-01-0	2018.06.01	2025.02.26	2차	6/9

13.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14. 기타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③ 경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의 작성방법은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경영위원회의 간사는 전략담당 임원 또는 팀장이 되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 5 (ESG경영위원회)

① ESG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 성

ESG경영위원회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 장

ESG경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3. 소 집

(1) ESG경영위원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결의방법

ESG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ESG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 조에 해당되는 대규모 내부거래
2.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재개정

③ ESG 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부의사항으로서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

- (1) 배당
- (2) 감사
- (3)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발행, 주식예탁증서발행 등에 의한 신주발행 및 실권주, 단주의 처리포함)

(4)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효성중공업 (주)	표 준 명	표준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차수	Page
	이사회운영규정	HS-1-9-01-0	2018.06.01	2025.02.26	2차	7/9

- (5)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7)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우선주식의 이익배당방식, 우선배당을 결정, 보통주로의 전환사항 등 포함)
- (8)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 (9)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
- (10)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 (11) 1,000억 이상 투자에 관한 사항
- (12) 상법 제398조에 해당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 (13) 상법 제397조의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에 따라 이사회
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4) 기타 위원회가 이사회 부의사항으로서 사전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2. ESG경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 (1) 그룹사 ESG관련 정책, 목표 수립과 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 (2) 환경, 안전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투자 및 활동 계획
- (3) 기타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④ ESG경영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 1. 공정거래관련 법규준수 이행 실태
- 2.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이행 실태
- 3.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정책

⑤ ESG경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의 작성방법은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⑥ ESG경영위원회의 간사는 전략/재무담당 임원 또는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 6(보상위원회)

① 보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 성

보상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2. 의 장

보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3. 소 집

(1) 보상위원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

(2) 보상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효성중공업 (주)	표준명	표준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차수	Page
	이사회운영규정	HS-1-9-01-0	2018.06.01	2025.02.26	2차	8/9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결의방법

보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보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2.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위원장의 선임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보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의 작성방법은 제 14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

④ 보상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임원 또는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담당한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효성중공업 (주)	표 준 명	표준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차수	Page
	이사회운영규정	HS-1-9-01-0	2018.06.01	2025.02.26	2차	9/9

② 간사는 재무담당 임원 또는 팀장이 되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0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0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